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현장

3+1 기초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합시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① 안전모 안전수칙



관련 조항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

추락·낙하 위험작업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합니다.

노동자

추락·낙하 위험작업을 할 때 안전모를 턱끈까지 조여 착용합니다.

최근 사고사례

'26.7.13. 충북 음성군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아 사망

② 안전대 안전수칙



관련 조항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사업주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합니다.

노동자

추락 위험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반드시 체결 합니다.

최근 사고사례

'26.6.23. 경남 함안군 컨테이너 제조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열기로 밀던 중 균형을 잃고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사망

③ 좌석 안전띠 안전수칙



관련 조항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사업주

좌석 안전띠를 갖춘 지게차·굴삭기의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노동자

지게차·굴삭기를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 합니다.

최근 사고사례

'26.6.15. 충북 충주 굴프장에서 굴삭기로 잔디식재 작업을 하다 굴삭기가 넘어지려 깔려 사망
'26.8.31.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중 급선회하다 넘어져 운전자가 깔려 사망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최상단 발판 작업·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넘어짐 방지조치 없음



아웃트리거 설치·발판높이 3.5m 이하
에서만 작업·안전모, 안전대 착용

사다리에서 작업중 떨어짐으로 매년 약 26명 사망
작업 전 4가지 수칙 확인 및 준수 !!!

관련 조항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42조(추락의 방지)

- 01 반드시 안전모 쓰기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 조이기
- 02 발판 높이 3.5m 이하에서만 작업
높이 2m 이상이면 안전대도 착용
- 03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조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아웃트리거 설치·다른 노동자가 지지
- 04 평평한 바닥에 설치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곳

최근 사고사례 '26.6.22.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 설치 작업중 떨어져 사망



고용노동부